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7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‘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’을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
- 나. 추진근거
 - (공통)법령 : 「민법」 제32조,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 - (개별)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
 - 조 레 : 「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4조
‘시장은 진흥원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
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
교부할 수 있다’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고,
- 평생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, 서울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, 동단위 평생학습센터, 모두의학교,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및 인문학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울형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함

라. 출연 사무내용

-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
 - 서울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,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운영방안 연구 및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, 온라인 소통 채널 운영
-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
 -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지원,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, 서울 평생교육 및 유관분야 관계자 연수 운영 등 전문성 강화
-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
 -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, 비대면 학습을 위한 문해교육 콘텐츠 개발 등 문해교육 기반조성 및 찾아가는 서울 문해교육 사업, 디지털 문해교육 등 서울시 문해교육 특화사업 추진
-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
 - 시민참여형 학습 공간 운영 및 혁신 모델 전파,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 개발·운영. 시민 커뮤니티학교 활성화 지원 및 시민 문화서재 모두의책방 운영
-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
 -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및 권역별 캠퍼스(신규 동남권캠퍼스 포함) 운영, 대학·기업·대사관·민간단체 연계 시민대학 운영 등 시민의 폭넓고 균형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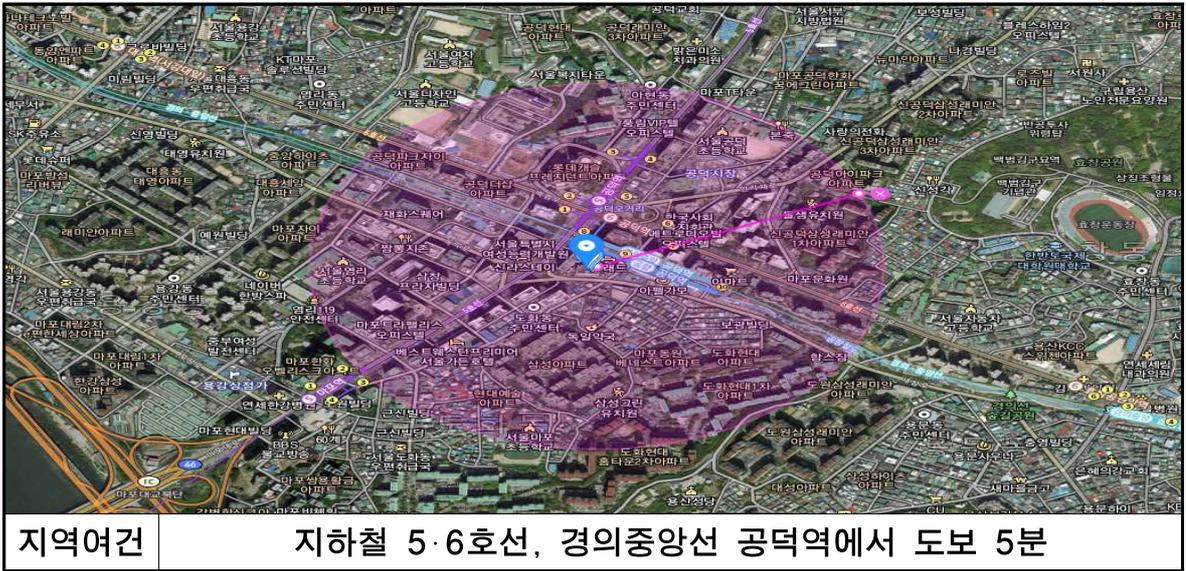
○ 서울 도시 인문학 지원 사업

- 인문학 분야 민간 기관·단체에 저술·번역, 교육연구 활동 및 인문동아리 지원, 인문학 포럼·축제 개최 등 대시민 홍보를 위한 대중화 사업 추진

마.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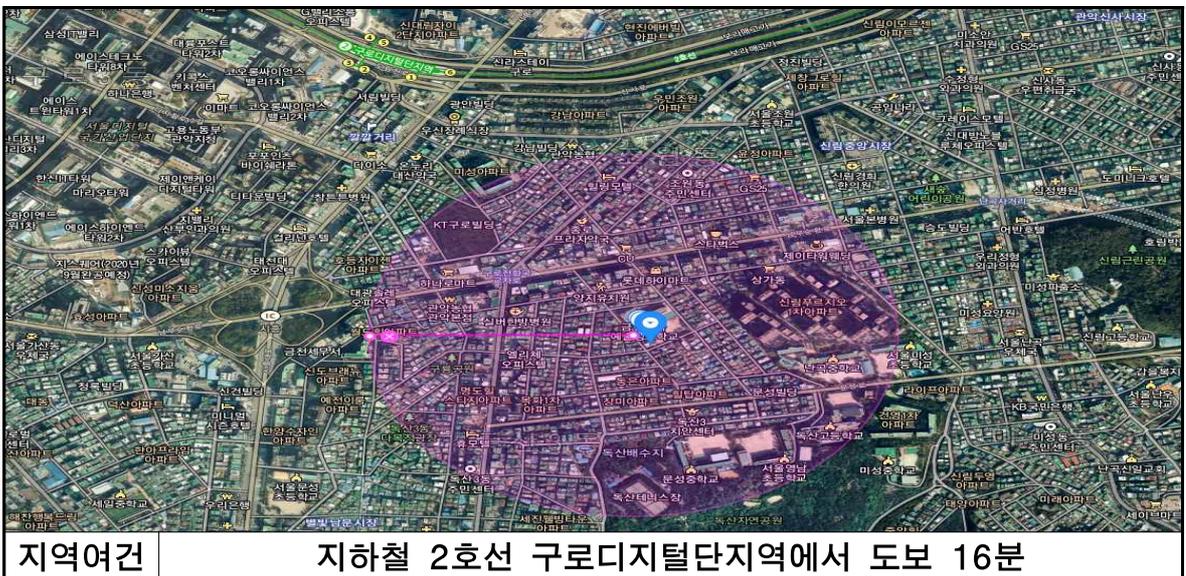
○ 평생교육진흥원 본원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, SNU장학빌딩 14층
- 시설규모 : 331㎡(사무실, 회의실1, 강의실1)
- 위치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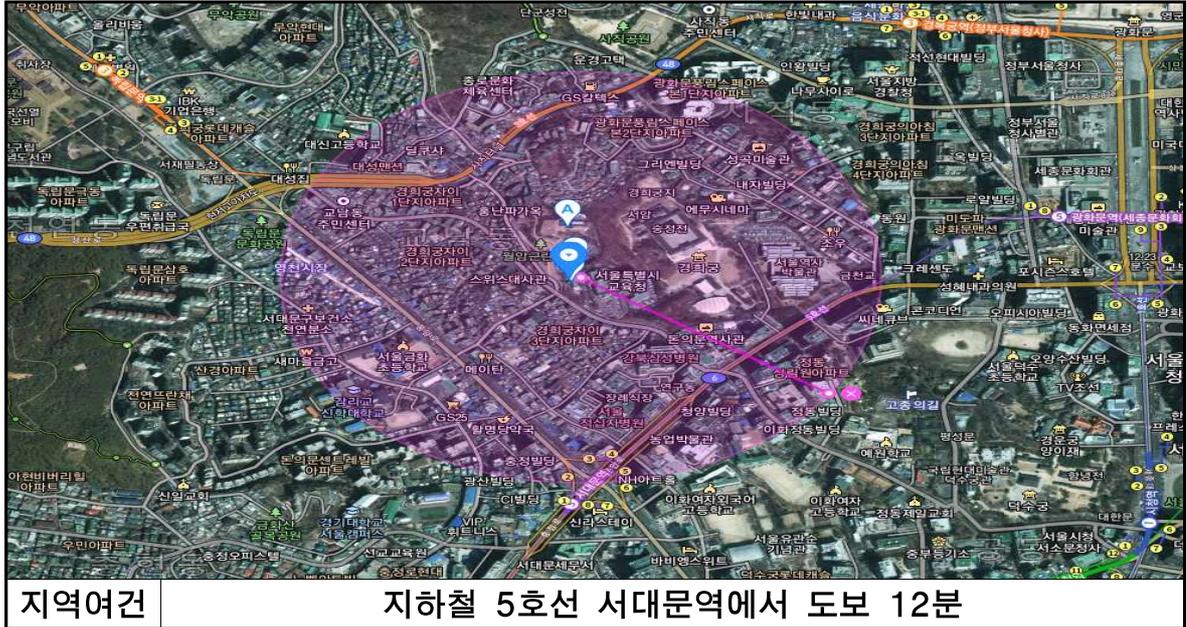
○ 모두의학교

- 소재지 :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
- 시설규모 : 2,462.91㎡(마루교실, 소통방, 강당 등)
- 위치도



○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캠퍼스

-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
- 시설규모 : 1,485 m^2 (강의실, 세미나실, 다목적홀 등)
- 위치도



○ 서울자유시민대학 신규 동남권캠퍼스

- 소재지 :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99
- 시설규모
 - 지상 7,211 m^2 (강의실, 세미나실, 다목적홀, 크리에이터부스 등)
 - 지하 4,600 m^2 (주차장, 기계·전기실 등)
- 위치도

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붙임1)

○ 출연금액 : 12,016백만원

- 인건비 2,881백만원, 운영경비 1,476백만원, 사업비 7,261백만원,
예비비 398백만원

사. 이사회 결과보고 및 서면결의서 : 붙임2

※ 코로나19로 서면 결의에 따라 회의록 이사회 결과보고 및
서면결의서로 회의록 같음

아. 결산보고서 : 붙임3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
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
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
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 최홍주 (☎ 2133-3963)

붙임 1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별 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'21년 예산(안)
출연금 총계(A+B+C)		12,016,682
고유사업 사업비(A)		7,261,089
①	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	520,500
	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·개발	284,900
	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	235,600
②	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	340,550
	한 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지원	220,550
	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	50,000
	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	70,000
③	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	420,200
	서울시 문해교육 기반 조성	166,900
	서울시 문해교육 특화사업	253,300
④	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	909,345
	시민참여형 학습 공간 운영 및 혁신 모델 전파	497,875
	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 개발·운영	297,810
	시민 커뮤니티학교 활성화 지원	77,450
	시민 문화서재 모두의책방 운영	36,210
⑤	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	4,070,494
	본부 캠퍼스 운영	913,810
	권역별 학습장 운영	190,464
	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	663,900
	민간연계 시민대학 운영	137,600
	서울자유시민대학 활성화 및 통합홍보	99,598
	미래(동남권) 캠퍼스 운영	2,065,122
⑥	서울도시 인문학 지원 사업	1,000,000
	인문학 분야 저술·번역 지원	355,000
	인문학 교육·연구 활동 지원	325,000
	인문학 대중화 사업	320,000
일반관리비(B)		4,357,157
	인 건 비	2,881,358
	운영경비	1,475,799
예비비(C)		398,436
	예비비	398,436